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영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발의의원 : 박영동 의원,

김보경 의원, 전홍배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으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폭염, 도심열섬현상, 폭염취약계층,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정의(안 제2조)
- 나.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종합대책 수립·시행 규정 (안 제5조)
- 라. 폭염저감조치의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마.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바. 무더위쉼터 운영·지원(안 제8조)
- 사. 교육 및 홍보 등(안 제9조)
- 아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(안)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폭염”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.
2. “폭염특보”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,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.
3. “도심열섬현상”이란 도심 지역의 기온이 그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.
4. “폭염피해 저감시설”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5. “폭염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
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
 - 다. 소년·소녀 가장, 한부모가족, 독거노인,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라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 이라 한다)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군민의 책무)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, 내 집 및 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 이라 한다)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종합대책 수립)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,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
2.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
3.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
4.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
5.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

6. 그 밖에 군수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폭염피해 저감조치) 군수는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도로 살수차, 하천·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·운영
2. 그늘막·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·운영
3. 그 밖에 군수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)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
2.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
3.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
3.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
4.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
5. 재난·복지·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
6.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,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

동을 실시해야 한다.

- ④ 제3항의 지원활동의 내용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8조(무더위쉼터 운영·지원)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
2.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보수 및 냉방용품, 식수, 비상약 등 확보
3. 그 밖에 군수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교육 및 홍보 등)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약칭: 재난안전법)(2023.12.26. 일부 개정, 2024.6.27. 시행)

제3조(정의)

9의3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」(2023.4.11. 일부개정, 2023.10.12.시행)

제33조의2(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
2.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
3.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·관리 및 장비의 확보
4.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
5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3(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, 폭염피해 상황,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

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(2023. 10. 4. 일부개정, 2023. 10. 12. 시행)

제24조의2(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“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
 - 2. 농어업인,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
 - 3.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·가축·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
 - 4.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5.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